

서울특별시한의사회

우)130-817 /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(421호) / 전화(02)960-0811 / 전송(02)960-0813 / E-mail : seouloma@naver.com
 사무처장 : 김석모 국장 : 김태준 부장 : 김윤기, 윤상환 대리 : 김승기 담당 : 박수민 / 홈페이지 : www.soma.or.kr

문서번호 서한의 제 116 호
 시행일자 2015. 6. 18. (년)
 경 유
 수 신 분 회 장
 참 조 사무국장

선 결			지 시	
접	일자	. .	결	
수	시간	:	재	
	번호		·	
처 리 과			공 람	
담 당 자				

제 목 중앙대의원 회비 수납 협조 요청

1. 한의학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. 관련근거: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/ 의장 2015-9호(2015.6.17)
3. 중앙회 대의원총회 의장 요청사항으로, 2014년 3월 23일에 개정된 정관시행세칙 제1조의 회비 미납규정을 보면,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강화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대의원의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 제9조 제3항과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 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4. 이에 각 분회에서 선출된 중앙 대의원의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시어 미납된 2015 회계연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수납하시어 2015년 6월 26일까지 본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회비 관련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규정 1부. 끝.

서울특별시한의사회



회비관련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규정

정관

제9조 (권리와 의무)

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
2. 회원은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련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 하며, 대의원 및 임원(산하단체를 포함한다)이 될 자격이 없다.

3. 전항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

제16조 (임원 등의 자격 상실) ①본회의 임원(산하기구를 포함한다.)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임원의 지위·자격을 상실한다.

4. 제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

② 전항 제4호는 대의원에 대하여 임원에 준하여 적용한다.

정관시행세칙

제1조 (신상신고, 회비납부) ①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를 하고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 시작후 3개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(2014.3.23.개정)

1. “미납”이라 함은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(2009.3.29.개정) (2014.3.23.개정)